

[가칭]글로벌 창업허브 주관기관 모집 공고

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(가칭)글로벌 창업허브를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18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본 공고는 [가칭]글로벌 창업허브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 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, 입주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추후 진행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 필요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
 - ① 실명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 - ② 실명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 (☎1577-1006)
- * 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- 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1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해외기업을 유치(인바운드)하여 글로벌 수준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바탕으로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(아웃바운드) 촉진

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지 개요



- 건물명 : 더코너136 빌딩
- 주 소 : 서울 마포구 양화로136(서교동 354-1)
 - * 상세 주소 : 서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도보 3분
- 개소일 : '26년 상반기(예정)
- 규 모 : 지하 6층 ~ 지상 12층
 - * 연면적 13,275㎡(4,016평) / 대지면적 1,393㎡(421평)

- **선정 규모** : 1개 기관(최대 3개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)
- **운영 기간** : '26. 1월 ~ '29. 12월 말 (4년간, 2년+2년)
 - * 운영기간 내 성과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하며,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중도에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**지원예산** : '26년 30억원 내외
 - * 지원예산은 국회 예산심의·확정 결과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
- **공간구성** : 개인정보, 저작권 등의 문제로 보안각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에 한해 설계도면(설계도, 투시도, 조감도) 제공(메일로 회신)
 - [별첨3] 보안각서 작성 후, 아래의 메일로 요청
 - 메일주소 : deeptech@kised.or.kr
 - * 단, 공고마감일 1주일 전(~'25.10.24, 18:00까지) 요청한 기관에 한해 제공

< (가칭)글로벌 창업허브 공간 구성 현황 >

구 분	구 성 현 황						
B1~2F	· 다목적실(190명), 네트워킹(220명), IR룸(3실, 58명) ※ 수용인원 기준						
3F~12F	· 회의실(31실, 217석)						
4F~10F	· 사무실(57실, 460석) ※ 중앙계단(인프라 밴드)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 가능						
B1, 3F~10F	· 오픈데스크(37개, 89석)						
사무실 및 오픈데스크	사무실(독립형)						오픈 데스크
	1~2인	3~4인	5~6인	7~8인	9~10인	12인 이상	
1F(중층)	-	-	-	-	-	-	11
3F	-	-	-	-	-	-	3
4F	-	-	2	1	5	1	4
5F	1	2	1	-	5	1	4
6F	1	2	1	-	6	-	3
7F	-	-	-	-	-	1	9
8F	1	2	1	-	3	1	3
9F	-	2	2	-	4	1	-
10F	-	3	2	-	3	2	-
합계	3	11	9	1	26	7	37

2
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 자격

- 대규모 창업지원 공간(전용면적 기준 2,000m² 이상) 운영, 글로벌 진출 지원(인바운드 포함), 투자유치 등 글로벌 창업허브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(기업)
 - 신청기관은 컨소시엄(신청-협력기관) 형태로 구성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(최대 3개사)하나, 대표기관(1개사)을 정하여 신청 필요
 - * 신청기관(컨소시엄 모두)은 모두 국내(한국)에 사업자가 있는 법인 필수
 - ** 본 공고는 동일 사업자(컨소시엄 모두)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- 기업의 형태(영리/비영리법인, 협회, 단체 등)와 상관없이 글로벌 창업허브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야함
-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- 이상이어야 함(국내 민간기업에 한함)

*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**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) 기준**

-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협약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「정부보조금」을 제출하여야 함(해외 소재지 기업에 한함)

□ 신청 제외대상

-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알리오)에 공시된 기관(공고일 기준)
-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⑤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⑥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⑧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3

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

① 사업 프로그램 운영

- ① (글로벌 진출) 국내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 사전준비 (컨설팅, 정보제공 등)부터 현지정착까지 일괄 지원
 - 해외 소재 역량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치·정착 지원
- ② (개방형 혁신)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(딥테크 중심) 유치 및 연계, 협업 자금 제공 등 개방형 혁신 촉진
 - 기타 자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딥테크 분야의 협업 허브化
- ③ (투자유치) 해외 VC·CVC를 파트너로 유치하고, 투자유치 행사(IR),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글로벌 투자 확보 유도
- ④ (대학연계) 대학이 보유한 핵심 자원(전문인력, 시설·장비)과 딥테크 스타트업을 연결하여, 스타트업의 인력·기술 관련 애로를 해결
 - 대학생 인턴십, 실증지원, 문제해결, 우대혜택 및 기술이전 등 대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
- ⑤ (네트워크) 허브 외부 인원도 참여 가능한 딥테크 중심·스타트업 행사를 수시 운영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허브 인지도 제고

② 입주기업 유치 및 선정·관리

- (유치활동) 글로벌 대기업, VC,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수행

- (선정·평가) 입주기업 선정, 심사·평가 운영 등 계획 수립 및 수행
- (관리·자동화) 입주율(공실률*) 관리 및 임대료 관리·징수 등 시스템화
 - * 3개월 이상 공실률이 50%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
 - ** 단, '26년 상반기의 경우 창업허브 공간 개소 및 입주기업 유치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공실률 관리 실적은 제외
- (기업지원) 입주기업 경영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

③ 글로벌 창업허브 공간 관리·운영

- (업체선정 등) 시설 종합 관리계획*에 따른 미화, 통신, 보안 등 시설관리 업체 선정 및 유지보수 등
 - * 시설 종합 관리계획은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에서 작성
- (편의시설) 멤버십 기업, 입주기업 대상 다목적 휴식 공간 등 운영
- (대관업무) 다목적실, 네트워킹 홀 등 공간 대관 업무(18시 이후, 주말 포함)
- (안내데스크) 글로벌 창업허브 공간 소개 및 방문객 대응 등
 - * 외국어 요건(외국어능력검정 50점 이상)을 갖춘 자로,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함
- (전시공간) 딥테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 운영
- (수익사업) 글로벌 창업허브 공간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해야 함
 - * 예시) 입주기업 대상 임대·관리비 청구 및 징수, 미납기업 관리·조치, 제세 신고 및 납부, 멤버십 운영 등이 가능한 기관(기업)
 - ** 발생하는 수익 활용 등 세부 계획은 향후 전문기관과 협의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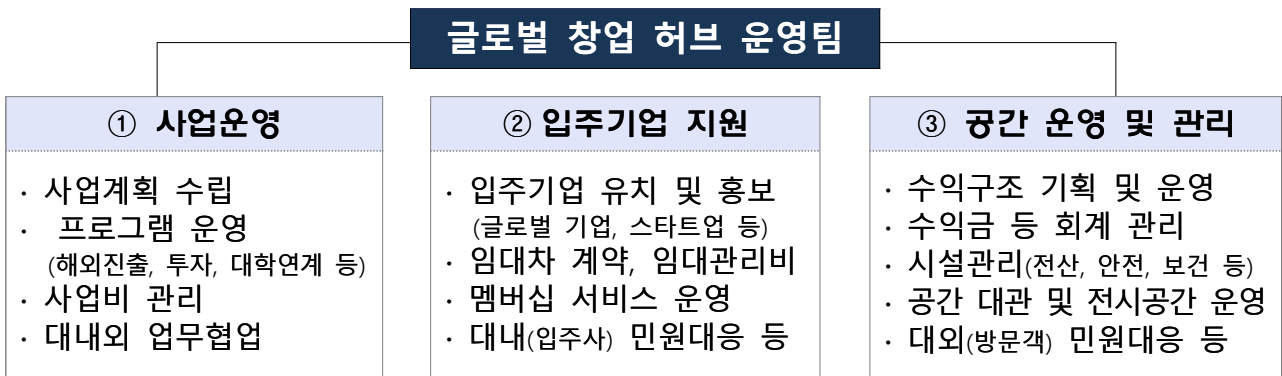
④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

- (전담조직 설치) 글로벌 창업 허브 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내 파트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

* 전담조직은 신청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하나, 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성과 글로벌 창업 허브 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

** 전담조직은 글로벌 창업허브 개소일부터 본 건물에 상주하여 운영하여야 함

< 글로벌 창업 허브 운영팀 조직(예시) >



- (전담조직 구성) 전담조직의 장(1인)과 전담인력(11인 이상)으로 구성

* 전담조직 사무실은 최대 15인 수용 가능

- 전담조직의 장(1인) :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(또는 주관기관의 장)로서 해외진출 지원, 창업, 투자, 입주사 관리 등 기업지원 경력을 보유하고,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

- 전담인력(11인 이상) : ① 전담인력은 최소 11명 이상 구성하되, ② 그 중 기업지원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구성, ③ 외국어 요건을 충족하는 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(필수)
(동일인이 ②,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,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)

- ① 전담조직(인력)은 본 사업의 업무 참여율이 100%인 수행인력을 의미(겸직 금지)
- ② 창업·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관련 경력에 한해 인정(소상공인 지원 경력 제외)
- ③ 외국어 요건 :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기준점수 "50점 이상" 어학성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대상인 자 [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참조]

<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>

[영어]

구분 기준점수	TOEFL	TOEIC	TEPS (*18.5.12. 이후 실시 시험)	FLEX (듣기·읽기)	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
50점 이상	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	790점 이상	385점 이상*	700점 이상	70점 이상

* 2018.5.12. 이전 실시 시험의 경우, 700점 이상

**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증빙 성적 제출 시 결과 회신 공문도 함께 첨부 요망

[제2외국어]

구분 기준점수	공 통		중국어	일본어	
	SNULT	FLEX	신HSK	JPT	JLPT
50점 이상	50점 이상	650점 이상	5급 180점 이상	640점 이상	N2 100점 이상

구분 기준점수	프랑스어	스페인어	러시아어	독일어
	DELFD/DALF	DELE	TORFL	Goethe Zertifikat
50점 이상	DELFD B1 이상	B1 이상	기본단계 이상	GZ B1 이상

※ 외국어 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,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도 검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. (예: TOEIC, TEPS 등 - 2년)

○ **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대상**

- ① 국외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검정외국어로 1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- ② 검정외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

※ 연수·학위취득·파견기관의 검정외국어 사용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증빙해야 하며, 관련 증빙 부재시 어학성적 제출 면제 불가

4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**신청기간** : 2025년 9월 18일 (목) ~ 2025년 10월 31일 (금), 16:00까지

- 1) **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**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16시 이전에 1단계 '저장'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17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, 보완 등이 허용 단, 16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는 신청 및 제출 절차 개시는 불가
- 2) 신청·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스타트업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3) 반드시 접수 기한 내에 '제출 완료'하여야만 접수 처리되며, "제출완료"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(신청방법) K-스타트업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 →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
- ① 'K-스타트업' 누리집 접속 → ② 회원가입*(신청기관 **대표자 명의**) → ③ K-스타트업 로그인 → ④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→ ⑤ 「**글로벌 창업허브 주관기관 모집 공고**」 클릭 → 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→ ⑦ 기본정보 입력 (일반현황 및 인력정보) 입력 → ⑧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(용량 제한 600MB) → ⑨ 제출 → ⑩ 신청내역조회 (마이페이지-사업신청현황)

*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- (제출서류) 제출 공문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참여 전담인력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 등 (※ 우편 제출 불가)

제출서류 목록	비고
제출 공문(신청기관)	기관장 직인본
사업계획서	
증빙서류(창업지원 실적 등)	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첨부 필수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	신청·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

* 신청 이후 제출한 자료의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

5

평가 및 선정 절차

□ 평가 방법 및 절차

- 2단계 평가(① 서류 → ② 발표 순)로,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대해 서류평가 (50%), 발표평가 (50%)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 - 서류평가 : 신청요건 확인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를 고려하여 7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 - * 신청기관이 7개 기관 이하일 경우 전체 기관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 - ※ (서류_동점자 발생시) 서류평가 항목 내 ①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정 → ② 정량평가 합산 결과도 동일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가 선정
 - 현장실사(필요시) :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업지원 실적 및 성과, 보유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 현장에서 확인
 - 발표평가 : 창업기업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, 기관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평가시간 : 40분 내외 (발표 15분, 질의응답 25분 내외)
 - ※ (발표_동점자 발생시) 발표평가 항목 내 ① 비전 및 추진전략 → ② 기업 발굴관리 → ③ 프로그램 운영계획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정
- 단계별 (서류 및 발표)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

요건검토	서류평가	발표평가	결과 통보
'25. 11월 1주차	'25. 11월 2주차	'25. 11월 4주차	'25. 11월 말

- 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- **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□ 최종 선정

-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 선정 기관(종합점수 1등)을 결정하고, 전문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확정

※ 선정평가 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후보기관 2개사(후보 1순위, 2순위)를 선정하고, 예비 선정 기관과의 협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(자진포기 등), 후보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(후보기관 적용일 :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~ '26.3.31일 까지)

< 주관기관 선정평가 기준(안) > *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비고
서류평가	수행실적	① 대규모 창업지원 공간 운영실적	10점	정량평가 (절대평가)
		②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수행 실적	5점	정량평가 (절대평가)
		③ 글로벌 프로그램(글로벌 진출 및 해외기업 유치 등) 수행 실적	5점	정량평가 (절대평가)
	인프라	④ 해외 지사, 지부, 본점	10점	정량평가 (절대평가)
	전담인력	⑤ 전담인력 전문성 및 역량	5점	정량평가 (절대평가)
	관리운영 종합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 종합 관리계획의 우수성 • 공실률 관리 계획 우수성 •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 우수성 • 홍보 및 마케팅전략 우수성 • 매출 및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적정성 	30점	정성평가
	비전 및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전략의 우수성 • 기업성장(글로벌진출 등)지원계획 우수성 • 글로벌대기업, VC, 스타트업 등 유치 전략 • 기업 투자유치 지원 계획의 우수성 • 운영 프로그램 계획의 우수성 • 자율특화 계획의 우수성 	35점	정성평가
합 계			100점	
발표평가	비전 및 추진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(추진전략의 구체성 등) • 대규모 창업지원 공간 운영 및 수행 역량 • 글로벌 진출 전략의 적정성 • 기업 투자유치 지원 계획의 적정성 	30점	정성평가
	기업 발굴·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로벌대기업, VC, 스타트업 등 유치 전략의 적정성 및 차별성 • 입주기업 등 성과 관리방안 	30점	정성평가
	프로그램 운영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및 차별성 • 자율특화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등 	30점	정성평가
	사업비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(구성비율 등) 	10점	정성평가
합 계			100점	

참고사항	①~⑤ 대표기관-협력기관 실적으로 모두 증빙자료 제출 가능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NO	평가지표	평가지표	배점	비고	
①	• 대규모 창업지원 공간 운영실적	평가기준	배점	10점	정량
		3개소 이상	10		
		2개소	8		
		1개소	6		
		1개소 미만	0		
<p>※ 대규모 창업지원 공간 사업실적 인정 범위 : 공고일 기준 사업 신청자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공간 영업장 수로, 1개 영업장에서 전용면적 2,000m² 이상인 곳만 사업실적으로 인정함</p> <p>- 증빙서류 : 해당 영업장의 영업신고증(사본),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</p>					
②	• 창업사업 수행실적	평가기준	배점	5점	정량
		5회 이상	5		
		4회	4		
		3회 이하	3		
<p>※ 창업사업 수행실적 인정 범위 :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단위사업 기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함</p> <p>- 단, 창업지원 사업은 국가별(국내/해외), 유형(정부·지자체·민간), 형태(사업화, 인프라) 등 제한은 없으나, 사업 목적에 '창업기업', '스타트업' 등 창업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</p> <p>- 실적 증빙서류 : ① 정부·지방자치단체 사업 : 협약서, 사업수행 확인서 등 ② 민간 및 자체사업 : 공고문, 보도자료, 협약서 및 계약서 등</p>					
③	• 글로벌 진출 및 해외 기업 유치 등 글로벌 프로그램 수행 실적	평가기준	배점	5점	정량
		5회 이상	5		
		4회	4		
		3회 이하	3		
<p>※ 글로벌 프로그램 수행실적 인정 범위 :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단위사업 기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인 글로벌 지원 사업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함</p> <p>- 단, 글로벌 지원 사업은 국가별(국내/해외), 유형(정부·지자체·민간), 형태(사업화, 인프라 등) 등 제한은 없으나, 사업 목적에 '글로벌', '해외진출', '유치', '인바운드', '아웃바운드' 등 글로벌 지원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</p> <p>- 실적 증빙서류 : ① 정부·지방자치단체 사업 : 협약서, 사업수행 확인서 등 ② 민간 및 자체사업 : 공고문, 보도자료, 협약서 및 계약서 등</p>					

NO	평가지표	평가지표		배점	비고	
④	• 해외 지사, 지부, 본점 등 거점 보유 현황	평가기준		배점	10점	정량
		5개 사무소 이상		10		
		3개 ~ 4개 사무소		8		
		2개 사무소 이하		6		
<p>※ 공고일 기준 사업 신청자가 운영하는 해외 거점(지사 등)만 인정함</p> <p>- 증빙서류 : 해외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, 설립 신고서, 공시자료 등</p>						
⑤	• 전담인력 전문성	평가기준		배점	5점	정량
		기업지원	외국어			
		2명 이상	4명 이상	5		
		2명 이상	3명 이상	4		
		2명 이상	2명 이상	3		
<p>※ 제출시점(공고 마감 전까지) 신청기관에서 근무중인 자로 한정하며, 신규채용 예정은 기업지원 및 외국어 자격 요건 실적 불인정</p> <p>※ 기업지원 인정범위 :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창업·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경력이 2년 이상 경력에 한해 인정(소상공인 지원 경력 제외)</p> <p>※ 외국어 자격 요건 인정범위 :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기준점수 "50점 이상" 어학성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대상인 자</p> <p>- 자격요건 증빙서류 : 경력확인서, 4대보험 가입자명부, 외국어요건 관련 증빙서류 일체</p>						
<p>※ [참고사항] 신청기관은 해외 지점, 모회사, 자회사 등 실적 활용 가능</p> <p>* 단, 해외지점, 모회사·자회사 관계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(예시 주주명부, 등기부등본 등)</p>						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 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광장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**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 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세부 관리기준,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 -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- * 신청기관의 장 (협력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)

-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접수 기간('25.10.31(금), 16:00)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,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
 - 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 - ** 단,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,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- 서류평가 합격자(발표평가 대상자)에 한해 발표자료 제출을 요청하고, 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서(문서)로 진행
 - * 발표는 한국어(한글) 또는 영어(영어)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어(한글) 번역본을 함께 제공할 것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전담조직 설치 요건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함
 - *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- ** 기한 내 신청요건 미충족 시,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,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신청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협약은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과 신청기관 간 다자 협약 진행
 - * 모든 사업비는 각 기관에서 일괄 관리·집행(대표-협력기관 간 사업비 재교부 불가)
- 신청기관은 지급보증보험 발급시 자체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,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 - * 지급보증보험 미제출 시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
- 신청기관은 대표기관 1개사를 선정하고, 대표기관에서 모든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
 - * 협력기관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성격의 항목만 책정 가능
-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, 창업사업화 전용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

7

기타 참고사항

□ 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- (사업 및 공고 관련 문의) 사업부서 담당자

세부사업명	담당 기관 (부서)	문의처
글로벌 창업허브	창업진흥원 (딥테크타운조성TF팀)	☎ 044-410-1631, 1692, 1696
글로벌 창업허브	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생태계과)	☎ 044-204-7607, 7676

※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(Quick Menu - 상담하기)

참 고

사업설명회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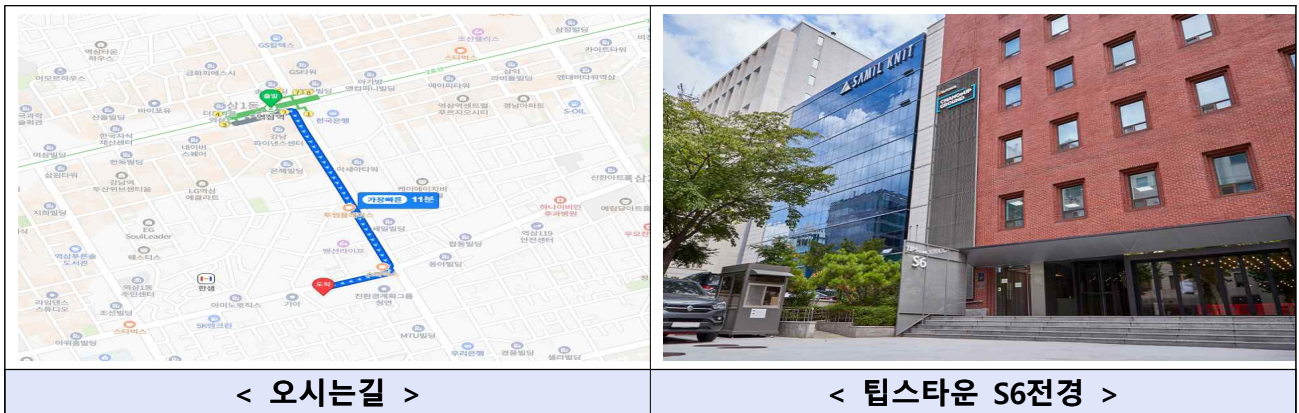
□ 추진개요

- (추진일시) '25.9.30.(화), 13:30 ~ 14:30

시 간	세부일정
13:00~13:30	▪ 사업설명회 참석자 접수 및 안내
13:30~14:00	▪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 설명 및 공고 안내
14:00~14:30	▪ 참석자간 공고 관련 질의응답(Q&A)

- (추진장소) 서울 팁스타운 S6(회성빌딩) 1F

- 상세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8 회성빌딩



* 지하철 오시는길 : 역삼역 2번 출구 → 도보 10분 → 팁스타운 S6

- (참석대상) 사업에 관심있는 신청기관 담당자
 - '26년 글로벌 창업허브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(기업)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
- (주요내용) '26년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 소개와 신청 자격, 방법, 신청 시 유의사항 등 모집공고 상 주요 사항 안내
 - 공고와 관련되어 현장참석자 대상으로 주관기관의 의무 및 역할, 질의 응답을 통한 공고 설명 추진
- (기타내용) ① 별도 주차지원이 불가하므로, 대중교통을 통한 참석
② 사업설명회와 관련된 유인물(공고문 등)은 참석자별 자체 준비